

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6개월
신청 기관	기관명				
	대표자			전화번호	
	소재지				
전담 분야					
설립 근거					
설립 목적					
설립 연월일					

「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방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1부. 2. 전문기술지원기관 업무 관련 실적 3. 전문기술지원기관 업무 관련 조직·인력 및 시설현황 4. 전담 업무 수행계획서 및 자금 집행계획 [별지 제15호서식] 5. 그 밖에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요건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법인등기사항증명서	

처리절차

